

#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7. 4. 19.

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안자: 남연희 의원

## 2. 제안이유

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되어 결산 대상이 변경되는 등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중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를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(안 제1조)

나. 감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 개정(안 제6조)

-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 사항에 추가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(2017. 3. 31. ~ 4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과 결산 정보 활용을 제고 등을 위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(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)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, 재무제표, 성과 보고서 등 결산검사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임